

예 산 총 칙

2011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합 계 | 328,591,303 | 9,857,739 |
| 일반회계 | 274,924,490 | 8,247,735 |
| 특별회계 | 53,666,813 | 1,610,004 |
| 기타특별회계 | 53,666,813 | 1,610,004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1,288,940 | 38,668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| 32,043,263 | 961,298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608,251 | 18,248 |
| 농업소득기금특별회계 | 4,808,787 | 144,264 |
| 기초생활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| 299,476 | 8,984 |
|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| 8,550,591 | 256,518 |
|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| 1,129,983 | 33,899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565,792 | 16,974 |
|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| 4,371,730 | 131,152 |

제 2 조 201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의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서"와 같다.

제 3 조 2011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2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052,696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| 2.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